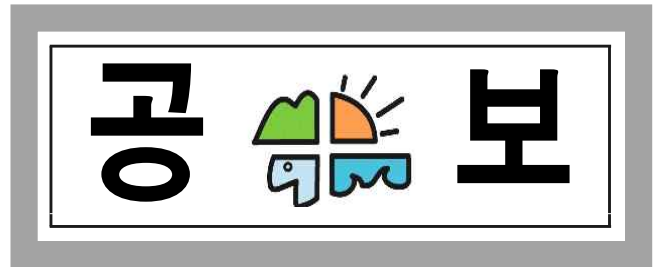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06호 2016년 8월 9일(화)

규 칙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

공 고

-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5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9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360호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행업"이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 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 ②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3. 영업용 자본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5. 공사용 공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6.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7.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제4조(지정기준)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정기간 등) ① 대행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행업자가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 등 교부)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 예치 등)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시공한 공사의 하자 등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수용가의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일천만원을 현금으로 시에 예치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4년으로 한다.

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이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대행업자 지정이 소멸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된 보증금은 소멸 또는 취소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④ 종업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은 대행업자가 진다.

제14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 방법 등을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공사비 청구) 대행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할 때
2. 휴업 중인 사람이 개업할 경우
3.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3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교부 받은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된 경우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8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한 경우
 7.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영업정지 일수가 총 1년이 넘는 경우
 9.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설치를 알선하거나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영업설비가 별표 1의 기준에 미달될 경우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3.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할 경우
5.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1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최초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대 행 업 지 정 기 준

(제4조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영업용 자본	○ 개 인 : 10,000,000원 이상 ○ 법 인 : 20,000,000원 이상			
사 무 실	○ 16.5㎡ 이상			
전 화	○ 1대 이상 (신청인 명의)			
공 기 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파이프렌치	8인치, 12인치, 14인치, 18인치, 24인치	개	각 2
	몽키스패너	10인치, 12인치, 15인치	개	각 2
	양 수 기	엔진용(2마력)	대	1
		전 기(1마력)	대	1
	굴삭기	엔진용	대	1
	파이프머신	전기용	대	1
		수동(2인치)	대	1
	천공기	수동(2인치)	대	1

※ 단, 시설장비는 본인 소유이어야 하며, 임대는 불가함.

[별표 2]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중 (적색)

- [illegible]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적색)

1. 규격 : 가로 50cm × 세로 90cm
2. 재료 : 판재 또는 철재
3. 색상
 - 1) 제명 및 하단 : 적색
 - 2) 그 밖에 : 청색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제3조제1호 관련)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연락처	
시 공 기 술 자 격 증		제 호		종업원수		
급수공사의 영업종목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영업용 자본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 의 자 : (인)

영업용 자본 명세서

(제3조제3호 관련)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자 산		금 액(원)		자 산		금 액(원)
현 금				지 출 어 음		
예 금				가 불 금		
수 취 어 음				미 불 금		
공 사 미 수 금				미 불 세 금		
재 료				차 입 금		
건 물				예 수 금		
토 지						
계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종업원 신고서

(제3조제4호 관련)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자격증 번호	직위	실무경력	고용 연월일	연락처	비고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종업원을 채용하였기에
관계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속초시장 귀하

공 사 용 공 기 구 명 세 서

(제3조제5호 관련)

기 구 명	규 격	단위	기본수량	보유량	비고
파 이 프 렌 치	8인치	개	2		
파 이 프 렌 치	12인치	개	2		
파 이 프 렌 치	14인치	개	2		
파 이 프 렌 치	18인치	개	2		
파 이 프 렌 치	24인치	개	2		
몽 키 스 패 너	10인치	개	2		
파 이 프 렌 치	12인치	개	2		
파 이 프 렌 치	215치	개	2		
양 수 기	엔진용(2마력)	대	1		
양 수 기	전기1마력)	대	1		
굴 삭 기	엔 진 용	대	1		
파 이 프 머 신	전 기 용	대	1		
파 이 프 머 신	수동(2인치)	대	1		
천 공 기	수동(2인치)	대	1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제7조제1항 관련)

지정번호 제 호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영업장소 :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뒷면)

년 월 일	변 경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제7조제2항 관련)

지정 번호	교 부 년월일	상호	대표자 성 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결 재		
							담당자	담 당	소 장
						()			

[별지 제7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체 관리카드 (제7조제2항 관련)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지 정 년 월 일	지 정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 사무소 : 대표자 :				
사 진		재 산			사 무 실		전 화		영 업 장 소 재 지		기 능 공 수
		대 지	m ²	원	자 가		타 가				
		건 물	m ²	원							
		평 가 액 원			면적 m ²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년 월 일	변 경 사 항	년 월 일	위 반 처 분 사 항	
파 이 프 렌 치		8인치									
파 이 프 렌 치		12인치									
파 이 프 렌 치		14인치									
파 이 프 렌 치		18인치									
파 이 프 렌 치		24인치									
몽 키 스 패 너		10인치									
몽 키 스 패 너		12인치									
몽 키 스 패 너		15인치									
양 수 기		엔진용(2마력)									
양 수 기		전기(1마력)									
굴 삭 기		엔진용									
파 이 프 머 신		전기용									
파 이 프 머 신		수동(2인치)									
천 공 기		수동(2인치)									

현 장 대 리 인 신 고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급수공사자격증번호 :

년 월 일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대 행 업 자
상 호 :
성 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전 면)

현 장 대 리 인 신 고 필 증

No.

소 속

직 위

성 명

년 월 일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의 사람을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속 초 시 장

(후 면)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
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이 증은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정이유

- 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한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2001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코자 함.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가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시행, 2016.1.1.)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및 목적의 조례명 변경 (안 제1조)
- 사용료의 감면 내용 변경 (안 제7조)
- 운영자문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10조)
- 상위 조례 내용 반영하여 “체육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수정 (안 별지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제1호서식)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담당(전화: 033-639-2686, FAX: 033-639-273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033-639-26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를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늦어도 징수익일”을 “징수한 다음 날”로, “불입하여야”를 “납입하여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요율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란 국제적인 행사를 말하며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의 제목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조례 제16조의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운영”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문화체육과장, 여성가족과장”을 “청소년수련시설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별표 제6호 중 “어린이”를 “아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용 목적				
사용 내용				
경기·행사명				
사용 기간				
임원 또는 지도위원	임 원 지도위원	명 명	사용자	명
관 랑 권	특별관람권	원	매	단체, 군·경 원 매
	일반관람권	원	매	초 대 권 원 매
	학생관람권	원	매	기 타 원 매
기 타				
사 용 료	원 납부년월일 . .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용목적				
허가시설 및 허가내용				
허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관람권 또는 기 타				
허가조건				
경기·행사명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속 초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입 장 권

입장권원부	입 장 권
No.	No.
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입장권
일금 원 (오전, 오후, 야간)	일금 원 (오전, 오후, 야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4호서식]

이 용 권

이용권원부	이 용 권
No.	No.
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권
일금 원 (오전, 오후, 야간)	일금 원 (오전, 오후, 야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7호서식]

검인신청서

[illegible]

1. 입 장 권

특별권	원권	매 (예매 매)
일반권	원권	매 (예매 매)
군, 경, 학생, 어린이권	원권	매 (예매 매)
초대권	원권	매
단체일반권	원권	매
단체 군, 경, 학생, 어린이권	원권	매

2. 임원증 및 선수증

임원증	매
선수증	매

일 월 년

신청자 주 소 :

성명 :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검 인

검 인
년 월 일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

3
c
m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u>	<u>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속초시체 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u>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속초시 청 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 례</u> 」----- -----.
제2조(사용료의 납부) 각종 사용료 는 분임징수관이 사용당일에 사용 자로부터 전액을 징수하여 세입 결의하고 <u>늦어도 징수익일 오전까 지 시금고에 불입하여야</u> 한다.	제2조(사용료의 납부) ----- ----- ----- <u>징수한 다음 날</u> ----- <u>납입하여야</u> ---.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 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u>의한</u>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 ---- 제4조 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라 ----- ----- ----- <u>따른</u> -----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에 따 른 요율은 별표와 같이 하고, 기 타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를 말하며 사용료의 감액은 5할을 초	제7조(사용료의 감면요율 등) ① 조 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의 그 밖 에 특별한 사유란 국제적인 행사

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
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

2. 아시아 또는 동양적인 규모의 행사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운영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문화체육과장, 여성가족과장,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를 말하며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6조의 운영위원회-----

----- .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
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
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 청소
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 운영 ----

----- 청
소년수련시설 담당부서장-----
-----.